

【2020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현황】

※ 교육 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대상별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어린이집 관련 법·규정에 의한 <의무교육> 11과정

교육명	구분	내용
아동학대 예방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아동복지법 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, 동법 시행령 제26조 3항 ▪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(건강·안전) 3-5-2-① (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) 필수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성폭력 예방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동법 시행령 제2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) ▪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-안전관리) ▪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(건강·안전) 3-5-2-① (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) 필수 ※ 매년 1.1~12.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(추진실적)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(http://shp.mogef.go.kr)에 등록 필수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든 보육교직원 ※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 1회(1시간 이상) ※ 교육방법에 따라 실적 등록 시 점수 배점이 상이하므로 교육 전 확인필요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다양한 방법 ※ 「아동안전교육」, 「아동학대예방교육」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(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)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
성희롱 예방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3조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주 및 모든 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직원연수, 조회 등을 통하여 실시 ※ 아래 해당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, 교육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인정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.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장
장애인식 개선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동법 시행령 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 ※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(www.able-edu.or.kr)에 추진실적 등록 필요 ※ 마이에듀 <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> 지정교육기관 (고용노동부 지정번호 제2018-32호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체험교육 등의 방법

교육명	구분	내용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※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,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. ※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·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,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(✓어린이집은 교육실시를 권장) ※ 마이에듀 <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> 지정교육기관 (고용노동부 지정번호 제2018-32호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, 체험교육 등의 방법
개인정보 보호교육 (CCTV의무화)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※ (5인 이상 사업장)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,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'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 제4조(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함.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정보의 이용,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자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 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: 연 1회 이상 (✓어린이집 해당) ※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: 1년 2회 이상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교사 인성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성교육진흥법 17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(교원의 연수 등)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(교직원) 4-3-2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8조(보육교직원 교육 등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2시간 이상) / 교원의 경우 연 2회, 상반기(2시간)+하반기(2시간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 프로그램 활용 등
인터넷중독 예방교육 (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)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(인터넷중독 관련 교육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다양한 방법

교육명	구분	내용
-----	----	----
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(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원 해당)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다양한 방법 ※ 매년 1.1~12.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제출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복지법 제26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(건강·안전) 3-5-2-① (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) 필수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
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기준법 제76조의2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
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<안전교육> 6개 과정

<교육근거>

- ☞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(어린이집 운영기준-안전관리)
- ☞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- ☞ 어린이집 평가제 3-5-2-①

교육명	구분	내용
실종·유괴의 예방·방지 교육	대상	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영유아 감염병 예방교육	대상	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	대상	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재난대비 안전교육	대상	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교통안전교육	대상	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영아돌연사 증후군 교육	대상	▪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▪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▪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

■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<재교육> 3개 과정

교육명	구분	내용
건강·영양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(건강·안전) 3-3-3-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건강 또는 영양 관련 주제의 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. (교육내용 : 영유아의 건강, 영양 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등) ※ 평가제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 집합교육 등
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(교직원) 4-3-2-①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(정신건강)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신건강 관련 교육 참여 (예 : 직무스트레스 관리,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사 연수 등)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어린이집 자체교육,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용 등
응급처치 (심폐소생술)	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(건강·안전) 3-5-2-③ 교직원 중에 응급처치(심폐소생술)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이수증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,
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육교직원
	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교육(마이에듀교사자람 http://jaram.ac), 집합교육, 내부연수 등의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보육교직원 중 1명이상 심폐소생술(CPR) 실습 2시간 필수 참석 (평가 시 이수증 확인)

■ 어린이집 운영관련 <담당자 의무교육>

교육명	구분	내용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	근거	·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, 동법 시행령 제2조 (의무)
	대상	· 연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
	횟수	· 신규교육 : 1년 이내에 1회 ·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	교육	· 환경보건협회 (http://epa.ecoedu.go.kr)
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	근거	·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(의무)
	대상	· 연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석면건축물관리자 (관리책임자-담당 보육교직원)
	횟수	·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(교육시간 6시간)
	교육	·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-러닝 (http://e-learning.me.go.kr)
식품 위생교육	근거	· 식품위생법 제41조 (의무)
	대상	·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(조리사, 영양사 등)
	횟수	· 연 1회 (신규 6시간, 기존 3시간)
	교육	· 한국식품산업협회 (http://www.kfia.or.kr/)
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	근거	·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(의무)
	대상	·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(담당 보육교직원)
	횟수	· 신규교육 :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,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,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· 보수교육 : 2년마다 1회
	교육	· 한국생활안전연합 (http://playsafety.or.kr)
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	근거	· 도로교통법53조3항, 시행령31조2항, 시행규칙37조2항 (의무)
	대상	·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
	횟수	· 신규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· 정기교육 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	교육	한국도로교통공단 (http://www.koroad.or.kr)
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	근거	· 소방시설,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,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(의무)
	대상	·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
	횟수	· 신규교육 :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·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
	교육	· 한국소방안전협회(http://www.kfsa.or.kr/intro_real.php)
조리원/영양사 위생교육	근거	· 식품위생법 제56조1항 (의무)
	대상	·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(조리사, 영양사 등)
	횟수	· 신규교육 :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·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(6시간)
	교육	· 한국조리사협회(http://www.ikca.or.kr)

어린이집 운영관련 <담당자 의무교육>은 교육과정별 해당 **전문교육기관에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상이한 법령에 따른 <장애인식개선교육>의 차이점 안내

<장애인식개선교육>은 상이한 법령에 근거하여 **각기 다르게 정의**되며,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근거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**교육대상, 교육방법, 교육실적보고방법** 등이 **상이합니다.**

1. **장애인복지법**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(2015년 12월 29일 신설)
 - *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'장애인식개선교육'은 **보건복지부** 관할
 - * 교육대상, 교육방법, 교육내용 등은 **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(www.able-edu.or.kr)** 확인 가능
 - ※ 어린이집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'장애인식개선교육'을 이수할 경우 2019년까지 인정을 해주었으나, 2020년도부터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여 함.

2. **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**(약칭: **장애인고용법**)제5조의 2에 의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(2018년 5월 29일 시행)
 - *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한 '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은 **고용노동부** 관할
 - * 교육대상, 교육방법, 교육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or '**한국장애인고용공단(www.kead.or.kr)**' 확인 가능
 - * 위탁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**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(교육 콘텐츠 포함)만 인정**

■ 상이한 법령에 따른 '장애인식개선교육' 비교표

	장애인복지법	장애인고용법
주관부처	보건복지부	고용노동부
법적근거	장애인복지법 제25조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교육대상	어린이집 , 유치원, 학교, 국가기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수법인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	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(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.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,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)
교육횟수	연 1회(1시간) 이상	연 1회(1시간) 이상
교육내용	1. 장애의 정의 2.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.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.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.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.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	1.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.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3.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4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5.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실적관리	교육 완료 후 30일 이내 실적관리 시스템(www.able-edu.or.kr) 보고	교육실시 관련 자료 3년간 보관
과태료	없음 (법제화 추진중)	300만원 이하 ('18.5.29. 시행)
위탁교육 필수조건	해당 사항 없음	장애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 지정 필수